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00 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한지아·안상훈·서일준

박정하 · 김예지 · 서범수

우재준 • 송석준 • 정성국

박성훈 • 이상휘 • 김 건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사·치과의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일련의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 음에 반해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변동이 없어, 긴 복무기간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 입 지원율이 감소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"3년"에서 "2년"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편입 지원

율을 높이고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예방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 중 "3년간"을 "2년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 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병력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,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4조(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)	제34조(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	2		
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			
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	<u>2</u>		
<u>년간</u> 복무하여야 하며, 그 기간	년간		
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			
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.			
③ •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		